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p>제 2019-97호 2019년5월24일(금)</p>	<p>여 수 시 보</p>	<p>시정지표</p> <p>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p>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정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여수시 고시 제2019-14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3
【공 고】			
○여수시 공고 제2019-1350호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모집 공고			/4
○여수시 공고 제2019-1354호 어업면허 처분 공고			/14
회 람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19 - 145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19-13	2019.5.24.	여수시 시청로1	여수시장 (해양항만레저과)	2019.5.24	2019.7.31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91-16번지 일원	거문도항 부잔교 설치공사

2019. 5. 24.

여 수 시 장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모집 공고

우리 시에서는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의 권리 보호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합니다.

2019년 5월 24일

### 여 수 시 장

#### 1. 위촉분야 및 인원

구 분	위촉분야	위촉예정인원	위촉기간	비 고
공개모집	시민옴부즈만	2명	2년 (1회 연임 가능)	

#### 2. 주요업무

- 가. 주민들의 권리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 나. 여수시장 및 여수시의회가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다.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 라.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 마. 고충민원 안내, 상담, 접수, 조사, 처리, 처리결과 이행실태 확인 및 점검, 운영 상황 보고 및 공표 등 활동수행
- 바.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3. 위촉 신분 및 근무 활동

- 가. 위촉신분 : 비상임 명예직(비공무원)으로서 옴부즈만 활동 수행
- 나. 근무방법 : 주 4일 근무
- 다. 활동수당 : 5급(15호봉) 공무원 연봉의 50% 상당 지급(근무일수 산정 지급)

#### 4. 전형방법

- 가.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 자격요건 적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일정 개별통지

나. 2차 면접심사 : 적격요건 심사

※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기본자세, 옴부즈만 및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 대한 면접

다. 의회 동의 대상자 발표 : 대상자 확정 후 개별통지

라. 의회 동의 : 여수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최종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됨

마. 최종 발표 :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2019. 7월 예정)

## 5. 지원자격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시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

\*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 설치한 대학부설연구소로서 법률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

나.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겸직금지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 6. 지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19. 6. 12.(수) ~ 6. 14.(금) 09:00 ~ 18:00
- 나. 접수장소 : 여수시청 시민공감담당관실(3층 시민옴부즈만실)
-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
- 라. 제출서류
  - 1) 지원서 1부
  - 2) 자기소개서 1부

-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 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 5)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 지원서 등 서식은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에서 내려 받아  
(다운로드) 사용

## 7. 유의사항

- 가.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결격사유, 겸직금지 사항 등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 다. 부정한 목적으로 지원서 등 선발전형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함
- 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마. 본 선발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류전형일 7일전까지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바.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여수시의 해석에 따름
-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여수시 시민공감담당관 시민옴부즈만실(061-659-3076)으로 문의

(앞면)

## 시민옴부즈만 지원서

여수시장 귀하

2019년 월 일

본인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에 지원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지원서 및 모든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관계법규 등에 의거 당해 위촉심사 및 위촉의 정지, 취소 또는 무효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적 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 월일			
		주 소			
		전 화		휴대폰	

학력 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주 요 경 력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 고
					~	
					~	
					~	
					~	
					~	

옴 부 즈 만  자 격 요 건	자격분야						
		경력사항					
	실적사항						
	결격사유	여	부	결격사유		여	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당의 당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행정기관등과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행정기관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기관등과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자격 및 면 허	종류(등급)	시행처		취득일		비 고	

## ※ 작성요령

- ‘자격분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임
- ‘경력사항’은 옴부즈만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력으로서 근무기간, 활동 실적 등을 작성
- ‘실적사항’은 옴부즈만 직무와 관련된 분야 또는 그와 유사한 분야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항 및 발표된 연구실적 등이 있을 경우에 작성(상장 사본 등 증명서류는 별도 제출)

## 자기소개서

성명 :

생년월일 :

2019. . .

작성자 ○ ○ ○ (서명)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그간 활동사항 및 업적, 지원동기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분량은 A4 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작성

##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

생년월일 :

2019. . .

작성자 ○ ○ ○ (서명)

-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본인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한 활동 계획을 작성하며, 특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는 시민을 구제하는 방안, 또는 사회적 갈등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조정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 ※ 분량은 A4 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작성

## 시민옴부즈만 추천서

성명 :

생년월일 :

상기 인을 -----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으로 추천합니다.

2019. . .

추천시민사회단체 : (인)

※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아 지원할 경우에 작성하며,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여수시(시민공감담당관)에서는 고충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옴부즈만의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서명인, 전화번호(휴대전화, 일반전화), 주소, 사진, E-mail, 학력, 경력, 자격 및 면허, 경력사항, 실적사항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오프라인으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 지원서」 접수 절차를 통해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여수시(시민공감담당관)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선정 및 관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시민옴부즈만 선정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선정절차 종료 후에는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5년간(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 및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②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제공	여수시(시민공감담당관)에서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목적 : 의회 동의 ○ 제공기관 : 여수시의회 ○ 제공항목 : 위에 수집항목과 동일 단,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 및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③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여수시 시민공감담당관 이경숙 (☎ 061-659-3076)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여수시(시민공감담당관)가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 및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

##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 어업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어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1769	폐류양식 어업	수하식	4	화양 용주	2019.05.24. 2029.05.23.	400	여수시 신월로 655, 109동 402호 (국동,서희스타 힐스아파트)	신유길	11422 대체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19. 5. 24.

여 수 시 장